

군산시 고시 제2013 - 89호

금강하구둑 낚시통제(금지)구역 지정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낚시통제(금지)구역으로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3년 7월 일

군 산 시 장 (직인)

- 다 음 -

1. 낚시통제(금지)구역의 명칭 : 금강하구둑 낚시통제(금지)구역 지정
2. 낚시통제(금지)구역 위치 :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-14번지 일원
【금강하구둑 배수갑문(어도) 기준 상.하류 500m까지 - 위치도 설정도면 참조】
3. 낚시통제(금지)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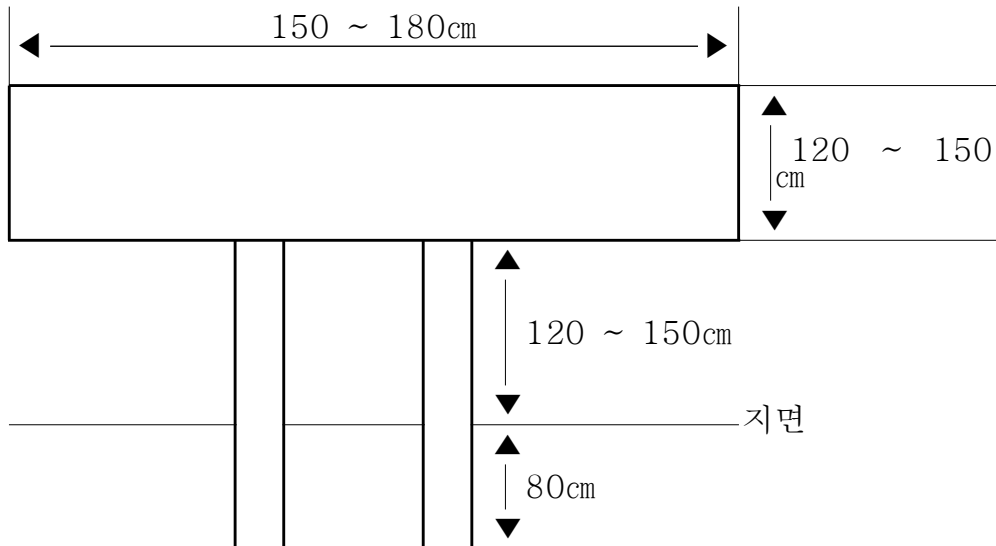
[부칙]

(시행일) 이 낚시통제(금지)구역 지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관계서류 열람 : 낚시통제(금지)구역지정 관련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산시 해양수산과(063. 454-291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낙시통제(금지)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(제2조제1항 관련)

1. 안내판의 규격



- 두께 및 재질: 3mm 이상의 철판
- 바탕색: 파란색
- 글씨: 흰색

2. 안내판의 내용

【 알 림 】

1. 이 지역은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낙시통제(금지)구역입니다.
2. 낙시통제구역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5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- 아 래 -

- 가. 통제 내용 : 낙시 금지
- 나. 통제 사유 : 회유성 어족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
- 다. 통제 구역 및 면적 : 금강하구둑 배수갑문(어도) 중심으로 상.하류 500m 지점까지 (면적 : 상류 32ha, 하류 41ha)
- 라. 통제 기간 : 2013년 7월1일부터 (연중)

2013년 7월 일

군 산 시 장

금강하구둑 남시통제(금지)구역 위치도

구분	지점	위경도	도분초(DMS)	위치설명	면적(ha)
강 측	A	위도 경도	36° 01' 12.74" 126° 45' 06.54"	배수갑문(강측) 끝 지점에서 상류 L=500m지점	32
	B	위도 경도	36° 01' 03.98" 126° 45' 29.39"	어도수문(강측) 시작 지점에서 상류 L=500m 지점	
	C	위도 경도	36° 00' 48.15" 126° 45' 23.59"	어도수문(강측) 시작 지점	
	D	위도 경도	36° 00' 58.11" 126° 44' 57.87"	배수갑문(강측) 끝 지점	
해 측	E	위도 경도	36° 00' 57.10" 126° 44' 57.27"	배수갑문(해측) 끝 지점	41
	F	위도 경도	36° 00' 48.15" 126° 45' 23.56"	어도수문(해측) 시작 지점	
	G	위도 경도	36° 00' 30.92" 126° 45' 18.75"	어도수문(강측) 시작 지점에서 하류 L=500m 지점	
	H	위도 경도	36° 00' 42.45" 126° 44' 48.42"	배수갑문(해측) 끝 지점에서 하류 L=500m지점	

금강하구둑 낚시통제(금지)구역 설정도면

